

[별표6]

안전 장비 설치 기준

순번	장비명	소방정(20톤 이상)			구조정 (5톤 이상)		지휘정	구조보트 등 (5톤 미만)
		1~3 등급	4등급	5등급	20톤 이상이고 전장 15m 이상	5톤이상 20톤미만 전장 9m 이상		
1	구명 조끼(1)	최대승선정원의 120% 이상(이중 20% 이상은 어린이용)						
2	줄사다리	○*	○	○	○	○	-	-
3	구명로프(2)	4	4	4	2	2	2	1
4	구명부환	12	10	8	6	4	2	1
5	핸드레일	○	○	○	○	-	-	-
6	스툼레일(3)	-	-	-	-	○	○	○
7	사이렌(4)	○	○	○	○	○	○	○
8	자기점화등(5)	2	2	2	1	1	1	1
9	로켓낙하산신호(6)	4	4	4	2	2	2	2
10	소화기(7)	12	10	8	6	4	2	1

- (1) 구명조끼: IMO 성능레벨 150이상의 등급(SOLAS 등급)일 것
- (2) 구명로프는 직경 10mm이상, 길이 30m 이상일 것
- (3) 스톼레일: 황천 항해 등으로 심한 선체 황요 시에 선박에서 이동·피난 할 수 있게 하는 소형 선박용 핸드 레일
- (4) 사이렌은 외부방송 기능을 포함한 것으로 설치할 것
- (5) 자기점화등 : 야간용 신호장비로 수면에 투하하면 자동으로 점멸 되어 시각적 구조 신호를 2시간 이상 발생시키는 장치
- (6) 로켓낙하산신호 : 야간용 신호장비로 로켓작용에 의하여 공중에 상승하여 낙하하면 서 붉은색의 불꽃을 40초 이상 발생
- (7) 소화기는 휴대식소화기(6.8킬로 이상)을 말하며, 휴대식소화기 1개는 간이식 소화기 (3.3kg) 2개로 대체 가능(소화기 수량은 최소한의 수량을 의미하므로, 충분한 수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할 것)

* "○"는 비치여부 임